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5·18민주유공자 대상 확대〉

■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95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18민주유공자 대상 확대	2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전진숙의원 등 29인
2. 제안일 : 2024. 10. 15.
3. 회부일 : 2024. 10.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18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Ⅲ. 검토의견: 5·18민주유공자 대상 확대

-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 대상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u>	제4조(적용 대상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 ----- ----- -----.
1. <u>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u>	<u><삭 제></u>

<u>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u> <u>보상을 받은 사람</u>	
2. <u>5·18민주화운동부상자: 5·</u> <u>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u> <u>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u> <u>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u> <u>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u> <u>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u> <u>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u> <u>보상을 받은 사람</u>	<u><삭 제></u>
3. <u>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회</u> <u>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u> <u>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u> <u>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u> <u>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u> <u>사람</u>	<u><삭 제></u>

-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면서, 5·18민주유공자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① 사망(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②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

부상자), ③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표 1] 현행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대상 및 구분

구분	관련자	신체적 희생 여부	보상 여부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제4조제1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	5·18보상법 제5조1)에 따른 보상 수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4조제2호)		상이 + 장애등급 판정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제4조제3호)		-	5·18보상법 제22조2)에 따른 지원 수급

[표 2] 5·18민주유공자 등록 인원 현황

(2025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본인	유족	본인	유족
인원	160	2,093	686	1,340	238

자료: 국가보훈부

- 1) **5·18보상법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5·18보상법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5·18보상법에서 “관련자”에 관한 정의조항이 신설 (2021. 6. 8. 일부개정)되면서 “관련자”의 범위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3] 5·18보상법에 따른 “관련자” 개정 내용

5·18보상법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고, 2021. 6. 8. 법률 제1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8보상법 (2021. 6. 8. 법률 제18203호로 개정된 것)	비고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u>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u> 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u>“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u> 을 말한다.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u>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u>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u>상이(傷痕)</u> 를 입은 사람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u>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u>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u> 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u>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u> 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u>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u> 를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21.6.8]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 대상 추가 > ①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③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④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⑤수배된 사람 ⑥해직된 사람 ⑦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이에,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 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하여 5·18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과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등록대상 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³⁾

○ 관련하여, 5·18보상법 개정으로 관련자에 추가된 대상 유형 중 ①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③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④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개정 전 5·18보상법에 의하더라도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므로, 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관련자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것은 ⑤ 수배된 사람, ⑥ 해직된 사람, ⑦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경우, 5·18보상법에 따른 “관련자”로 인정되면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현행법은 제7조제2항에서, 등록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 후 유공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4조는 5·18민주유공자의 등록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를 5·18보상법에 따른 관련자와 일치시키게 되면 5·18민주유공자 등록 요건도 완화되므로, 유공자 대상 범위가 확대됨.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 4] “관련자” 확대에 따른 유형별 관련자 및 유공자 인정 가능 여부

“관련자” 확대 대상	5·18보상법에 따른 관련자 인정 여부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 여부	현행법에 따른 유공자 등록 가능 여부
	개정 전	개정 후		
①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	○	○ (보상금 대상자)
②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	○	○	○ (보상금 대상자)
③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	○	○	○ (기타지원금 대상자)
④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	○	○	○	○ (기타지원금 대상자)
⑤ 수배된 사람	×	○	×*	×
⑥ 해직된 사람	×	○	×*	×
⑦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	×*	×

*‘단순 수배자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5·18보상법에 따르더라도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고, ‘해직된 사람’은 생활 보조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개정 전 5·18보상법에 따른 관련자 인정 이외에도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았을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각 유공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보훈보상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삭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현재 5·18민주유공자는 5·18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5·18보상법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⁴⁾ 동 법은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공헌한 자를 유공자로서 예우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 범위를 다르게 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의 경우에도 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 ‘사망·상이’ 또는 ‘훈장·포장 등 공로 인정’을 규정하고 있으며,⁵⁾ 5·18보상법도 보상금 또는 기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망·상이 또는 생계지원의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5·18민주유공자 등록요건 중 ‘보상·지원 여부’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동 법의 취지, 타 유공자에 대한 등록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5·18보상법 개정 이후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8차 심의에서 관련자로 인정은 받았으나

4) 5·18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 (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보상 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인원은 109명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그 인원도 5·18민주유공자 대상에 포함되게 됨.

[표 5] “관련자” 대상 확대 후 심의 결정 인원

(2025년 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관련자 인정 인원				5·18민주유공자 대상 인원	
		보상금*	지원금*	그 외	현행	개정안
제8차 심의 결정 인원**	222	43	70	109	113	222
수배	0	0	0	0	0	0
해직	13	0	0	13	0	13
학사징계	96	0	0	96	0	96

*보상금은 5·18보상자법 제5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금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의미

**제8차 심의 결정 인원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완료된 결과임(신청인원 중 22% 완료)

자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부

□ 둘째, 현행법은 상이를 입은 유공자 본인과 유족 등을 구분하여 보훈 보상체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유공자의 유형에 따라 지원 체계를 달리하기 위함으로, 개정안과 같이 5·18민주유공자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취지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의료지원, 수송지원 등과 같이 상이자와 비상이자를 구분하여 다르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제도의 경우에도 유공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표 6] 현행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지원 체계

구분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비고
교육지원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본인(사망 시 미성년 제매), 자녀	본인(사망 시 미성년 제매), 자녀	*지원 대상 차이
취업지원	배우자, 자녀	본인, 배우자, 자녀(본인이 장해등 급 11급 이상)	본인, 배우자	*상이 등이 부양 양육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
의료지원	배우자, 선순위자: 진료비 감면	본인: 국가 부담 ⁶⁾ 배우자, 선순위자: 진료비 감면	본인, 배우자, 선순위자: 진료비 감면	*상이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 차이
수송시설 이용지원	-	본인 및 보호자	-	*상이자만 지원
보훈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본인) 5·18민주화 운동부상자회 (유족) 5·18민주유 공자유족회	(본인) 5·18민주화 운동공로자회 (유족) 5·18민주유 공자유족회	*유공자 유형별 보훈단체 가입

* 대부지원, 양로지원 등과 같이 유형 구분없이 지원되는 경우는 제외

○ 또한,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체계
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경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제12조, 제34조 등을 개정안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가 있음.⁷⁾

□ 이상을 종합하면, 5·18보상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관련자”의 범위에
맞추어 이 법을 개정하려는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5·18민주유공자 등록요건으로서 보상·지원금 대상 여부를 폐지하고,

6) 다만, 장해등급 11급 미만, 상이처 외 진료 시에는 진료비의 10퍼센트를 본인이 부담

7) *(예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및 미성년 제매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
우의 그 미성년 제매

5·18민주유공자의 유형을 삭제하는 것은 보훈보상의 취지 및 기본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개정안 제4조는 5·18보상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 보상심의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표 7] 체계·자구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비고
제4조(적용 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 ----- ----- -----.	제4조(적용 대상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 ----- ----- -----.	5·18보상법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예우하려는 동 법의 입법취지와 타 유공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망·상이 정도의 구분 없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모두를 5·18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 1

「5·18유공자법」에 의한 예우('02년~)⁸⁾

□ (등록요건)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해당

- ① (사망·행불자) 5·18관련 사망하거나 행불되어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
- ② (부상자)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1~14급)**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 ③ (기타 희생자) 5·18보상법에 따라 기타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 (5·18보상법 제22조 기타지원금) 사망·상이로 ‘보상금등’을 받지 않은 자 중 5·18에 적극 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5·18보상지원위원회에서 기준 마련

□ (등록절차) 「5·18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결정서 등 보상금 지급 사항을 확인, 범죄사실이 없으면 보훈관서에서 등록·결정

※ 5·18유공자 등록인원 : 3,505명('02년) → 4,496명('24.11월), '02년 법 제정 이후 991명 증가

<5·18유공자 등록 현황>

(‘24년 11월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합 계	4,496
5·18민주사망(행불)자	160
5·18민주부상자	2,769
5·18민주희생자	1,567

□ (지원사항)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으므로 **보훈급여금**은 미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지원

8)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5·18보상법에 따른 5·18보상심의 개요⁹⁾****□ 기존 보상심의 경과**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신청인원	보상인원	보상액	보상비율
계	9,227	5,807	251,119	62.9%
1차 ('90)	2,693	2,219	142,171	82.4%
2차 ('93)	2,788	1,832	38,771	65.7%
3차 ('98)	837	464	27,456	55.4%
4차 ('00)	868	473	18,572	54.5%
5차 ('04)	527	109	4,827	20.7%
6차 ('06)*	1,008	426	13,639	42.3%
7차 ('15)**	506	284	5,683	56.1%

* 재분류 신체검사 신설, ** '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 발표 대상(강제구금·연행) 구제

□ 제8차 5·18보상심의 개요

- 일 정 : '23.7.1~12월말까지 접수
- 신청인원 : 1,979명 신청(기존 대상의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 포함)
- 결 과 : 437명에 대한 심의 완료(22.0%)
 - 222명 인정, 215명 불인정

9) 자료: 5·18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부

